

전자통신을 통하여 금지명령 전달 또는 만기 통보를 받는 신청인들에게 알리는말:

다음과 같은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:

- 금지명령서가 전달된것과 또 만기 30 일전 통보를 받기위해 금지명령이 발행된 카운티에 있는 보안관 사무실에 이미 본인의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 아니면 둘 다 제공했을 경우.
그리고
- 본인의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 되었을 경우.

금지명령을 발행한 카운티에 있는 보안관 사무실에 아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함.

이 양식을 법원에 접수하지 마십시오.

만일 당신의 연락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 되었다면 이 명령서를 받은 법원에 반드시 따로 알려야합니다.

보통 이 양식이 사용되는데는 금지명령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입니다. 하지만 본인이 계속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금지 명령서의 전달과 만기에 대하여 통보 받기를 원하고 금지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을때는 언재라도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이것은 자발적인 것임 - 당신은 이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당신은 전자통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.

보안관 사무실에 주는 신청인의 연락처 정보 변경 통보

신청인 이름: _____

피고 이름: _____

법원 사건번호: _____

명령서를 발행 받은 카운티: _____

본인의 휴대전화 번호: _____

본인의 휴대전화 서비스 회사(ATT, Verizon, 등등...): _____

본인의 이메일 주소: _____